

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제1호나목 후단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기간의 계산은”으로, “행정처분을 한 날과”를 “행정처분을 받은 날과”로, “후에”를 “후”로, “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”를 “기준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호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별표 5 제2호사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13조제1항, 제14조제 2항 또는 제17조제2 항에 따른 허가·변 경허가, 갱신허가 또 는 승인·변경승인 을 받은 경우	법 제25조제 1항제2호의3	허가취소				
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	--	--	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에 따른 별표 5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·변경허가·갱신허가·승인·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